

제 5 장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제 1 절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1. 개 관

과거 우리의 해외이주정책은 주로 과밀인구 해소를 위한 인구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해외이주의 개념이 이민 송출국과 수민국간의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이해됨에 따라 우리의 해외이주도 호혜적 국제협력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를테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업 및 취업이주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해외 직접투자로 인해 우리 경제의 대외적 확대에, 수민국에 있어서는 우리 자본을 통해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여 양국간 호혜적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해외이주를 통한 민간문화교류 증대는 양국간의 이해증진을 돋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의 해외이주자 수는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된 이후 34년동안 82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수는 사회주의권을 포함하여 약 522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해외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은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끈기와 인내, 근면과 성실로 세계 도처에서 한국의 얼을 심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 해외이주정책

정부는 해외이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 국민들이 해외이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이끌어 왔으며, 해외이주의 촉진을 위한 수민국의 수민문호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이주원(移住源) 개발을 위해 한국 국제협력단 및 재외공관 등 국가기관의 해외조직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이주정보를 수집, 홍보하여 왔다.

또한 질서있는 이민송출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1988년 11월 국제이민기구(IOM)에 가입한 이래 걸프사태로 발생한 난민 수송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 이민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여 왔다.

한편, 정부는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30여년이 경과하면서 변화된 대내외 현실 여건에 맞도록 이주제도를 재정립하기 위해 1991년 12월 해외이주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해외이주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계화 추세에 따른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3. 해외이주 현황

최근의 대외적 여건을 살펴보면, 각 수민국들은 보호주의적 수민정책을 취하고 수민문호를 극히 제한하거나 규제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의 호전에 따라 해외이주 희망자가 줄고 이주를 희망하더라도 후진국으로의 이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해외이주자 수는 1980년 37,510명에서 계속 하강세를 보여 1996년에는 12,949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1996년의 해외이주자 12,949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미국으로의 이주자가 7,277명 (56.2%)으로 가장 많고, 카나다 3,073명 (23.73%), 뉴질랜드 2,045명 (15.8%), 호주 519명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연고초청이주 5,139명(40%), 취업이주 4,291명(33%), 사업이주 2,346명(18%), 국제결혼 1,170명(9%) 등의 순이었다. 형태별 이주현황에서 특기할 점은 1990년대 이후 연고이주가 줄어든 반면, 사업 및 취업이주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점이다. 즉, 사업 및 취업이주는 1990년의 4,622명(20%)에서 1996년에는 6,637명(51%)으로 괄복할 만한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이는 호혜적 국제협력차원에서 볼 때 고무적 현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체적인 이주자 수가 줄고 있는 반면, 사업 및 취업이주가 늘고 있는 것은 연고초청이주보다는 더욱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이주형태로의 변화로 해석된다.

4. 역이주 현황

역이주자의 추이를 보면 1980년 1,049명(이주자 대비 2.8%), 1986년 2,584명(7%)에서 1989년 6,685명(25%), 1992년 8,892명(50%)으로 역이주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오다가 1996년 6,824명으로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1996년 역이주자 6,824명의 내역을 보면, 영주귀국자가 5,311명이며, 해외이주신고를 하였으나, 이민을 포기한 자는 1,513명이었다. 역이주자를 국가별로 분류하면, 미국이 4,377명(6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카나다 368명(5%), 아르헨티나 347명(5.1%), 호주 109명(1.6%), 기타 1,623명(23.8%)의 순이었다.

역이주자 중에는 특히 연고초청 이주자들이 많이 역이민하는 반면, 사업이주자처럼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주한 사람들은 적게 역이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연고초청 이주자들보다 사업이주자들이 비교적 쉽게 현지 적응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1. 재외동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우리의 재외동포사회는 1990년대 들어 구소련 및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과거 우리의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 지역 거주동포들이 동포정책의 대상으로 새로이 포함되었으며, 오랜 이민사로 인해 재외동포사회내의 주류가 이민 1·2세대에서 2·3세대로 넘어가는 세대교체라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을 다시 검토하여 1995년말에 재외동포정책을 새로이 수립하였다.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는 “재외동포들의 협통, 문화 및 전통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유념하면서 거주국 사회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또한 존경받는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법, 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설정된 기본 목표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추진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는 첫째, 재외동포들의 자조노력을 권장·지원하고, 둘째, 재외동포들이 거주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거주지역 사회 내에서 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셋째, 재외동포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언어·전통문화·예술 등의 차원에서 지원하

고, 넷째, 자유, 민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며, 다섯째, 재외동포들의 거주국내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여섯째, 재외동포들의 한국 내에서의 투자 등 경제활동의 장려 및 재산권 행사 등 이익보호를 위한 국내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것 등이다.

2. 재외동포정책의 시행

정부는 재외동포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여러 부처로 분산된 재외동포 관련업무를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관련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1996년 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무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1996년 5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동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는 1996년 5월 3일 제1차 회의에서 정부의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따라 중점 추진계획과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외동포재단」의 설립과 구체적인 기능,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1996년 12월 4일 개최된 제 2차 회의에서는 사할린 한인의 조기 영주귀국 추진과 조선족 동포 지원방안, 조선족 상대 불법행위 방지,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강화 그리고 병역의무대상 재외국민의 병역 관련 편의 증진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 그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3. 재외동포재단 설립 추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중점 추

진대상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11월 일본 오사카와 1996년 9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재외동포들에게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6년 5월 제 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재단 설립의 상세계획에 합의하고 동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재외동포재단법」의 입법을 추진, 1996년 11월 대통령의 재가를 마쳐 정기국회에 상정하였고, 1997년 3월 국회 의결을 거쳐 8월경에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재외동포재단법은 “재외동포”를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②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에 관한 최초의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면 동 재단은 첫째, 모국방문사업 등과 같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각종 교류사업, 둘째, 재외동포와 관련된 각종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사업, 셋째, 재외동포 대상 교육·문화·홍보사업을 하게 되며 이외에도 재외동포 관련사업으로서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이나 재단의 목적달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방침에 따라 직원수 30-40명선의 소규모로 시작되며, 처음엔 경비도 전액 정부가 출연할 계획이나, 앞으로 재단이 기금(基金)을 조성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조직과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재외동포 관련 각종 정책의 수립은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남게 될 것이다.

4. 앞으로의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정부는 지금까지 수립된 재외동포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재외동포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재외동포들이 거주국내에서 현지인들과 원만히 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외동포들이 주로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들이 한국의 문화, 나아가 우리 재외동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본국 내에서 투자등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재산권 행사등의 각종 활동 보호를 위한 국내법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재외동포들의 거주국에서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외동포사회 지원을 위한 제반정책은 1997년도에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